

신기술 사용협약서

- 신기술명 :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 (SCW) 시공기술
- 신기술 번호 : 건설신기술 제772호
- 발주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신기술 적용 : 1-5생활권 복합편의시설 건립공사(제2공사) 중 지열 냉난방 공사 명 시스템 공사
- 신기술보유자 : (주) 지지케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1-5생활권 복합편의시설 건립공사(제2공사) 중 지열 냉난방 시스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발주청으로서, 신기술보유자는 신기술보유자로서 상기 신기술을 공사의 낙찰자가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①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운 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83호, '16.12.8.)」을 준용한다.
②위 공사 중 신기술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도서 포함)에 의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신기술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④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 입찰, 공사진척 등의 과정에서 유사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신기술 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산정하며,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별표1의 일정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발주청이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신기술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3항 및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016-733호, '16.11.8.)」에 따라 건설신기술 협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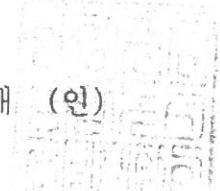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에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하도급 비율은 82%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등 신기술보유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신기술보유자”가 계약 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청”은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보유자”는 ~~의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 년 월 일

“발주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이충재 (인)



“신기술보유자” : (주) 지지케이 대표이사 안근묵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